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복잡한 지방세 세목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도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규정 (안 제3조)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납기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 및 부과대상 지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4. 검토의견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 납세자가 전국 어느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항 및 제2항)
  -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송부토록 함(제3항)
- 안 제4조에서는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 취득 사항 확인이 가능한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함
- 안 제5조에서는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함
- 안 제6조에서는
  -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함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사용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사용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으로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함
-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를 채광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명시하고,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토록 하였으며,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도세 부과징수를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